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29호 2021. 6. 3.(목)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72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 사천시 공고 제733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72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소에 배정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읍면동 간호인력 정원을 읍면동으로 배정하고, 부서별 직렬 불부합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나. 기관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총합계		964	510(3)	17	<u>150</u>	51(1)	<u>26</u>	<u>119</u>	<u>91</u>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33	508(3)	17	<u>121</u>	51(1)	<u>26</u>	<u>119</u>	<u>91</u>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5급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 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6	154	3	26	13	6	30	14	
	행정	49	44	2		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14			1				
	보건진료	<u>2</u>			<u>2</u>					
	행정+세무	13	9					1	3	
	행정+사회복지	19	11			1	1	3	3	
	행정+농업	8	2		1		2	3		
	행정+공업	2	2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u>3</u>			<u>3</u>					
	행정+시설	26	24	1			1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u>5</u>			<u>5</u>					
	공업+시설+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9	9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사회복지	1			1					
	행정+녹지+공업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5	3					2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u>행정+보건+식품위생</u>	<u>1</u>			<u>1</u>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렬별										
6급	행정+환경+위생	2				2				
	행정+운전+방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2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u>행정+사회복지+</u> <u>식품위생</u>	<u>1</u>						<u>1</u>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전산+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 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 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시설	1	1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렬별										
6급	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59	151	3	40	13	5	27	20	
	행정	55	38	2		2	1	9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6	13			2	1			
	수의	2			2					
	보건진료	<u>7</u>			<u>7</u>					
	행정+세무	7	6					1		
	행정+사회복지	11	7			1			3	
	행정+전산	<u>4</u>	<u>3</u>			1				
	행정+농업	5	1		2		1	1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8	27						1	
	행정+해양수산	1	1							
	<u>행정+방재안전</u>	<u>1</u>	<u>1</u>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u>2</u>			<u>2</u>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시설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7급	농업+녹지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농업	2	2							
	행정+공업+환경	9	7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8	1				2		5	
	행정+농업+시설	6	3					2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세무+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 수산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운전	4	2		1	1				
8급	소계	229	108	4	<u>41</u>	11	<u>10</u>	<u>26</u>	<u>29</u>	
	행정	53	22	1		1	5	11	13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세무	2	2							
	사회복지	11	4				2	2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간호	18			<u>13</u>		<u>1</u>	<u>2</u>	<u>2</u>	
	보건진료	4			4					
	시설	14	13			1				
	행정+세무	9	5					1	3	
	행정+사회복지	13	10			1	1		1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4	4							
	행정+숙기	1		1						
	행정+농업	4	1		1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보건+간호	8			8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시설	20	16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 통신	1	1							
	운전	5	2		1	2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40	64(3)	4	6	11(1)	4	29	22	
	행정	29	7(3)			2(1)	1	11	8	
	사회복지	6	3				1		2	
	공업	1	1							
	농업	1			1					
	시설	9	6			1		2		
	세무	2	2							
	보건	1			1					
	환경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u>3</u>	<u>3</u>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9	9				8	2		
	행정+농업	3			1		1		1	
	행정+녹지	3	3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0	9					1		
	행정+속기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3							3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	<u>4</u>	<u>4</u>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속기	1		1						
	운전	5	2	2		1				
	사무운영	5	3			1		1		
	전기운영	1				1				
	방호	3	1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상당	비서	-	-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함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사천시 공고 제2021-733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경찰서의 「지역 공동체치안 협의체」 3월 정기회의 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내용을 포함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화장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신설(안 제19조)
- 다.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 등 신설(안 제20조)

사 천 시 공 보

제 72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63,
FAX : 831-6025)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리와 복리증진”을 “위생상의 편의와 안전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제1호의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의”를 “공중화장실등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이”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가”로,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전부를 단체·개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범죄예방)”을“(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제11조 본문 중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을 “시장은 공중화장실을 다수인이”로, “화장실을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 ①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중 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과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불법촬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u>위생편리와 복리증진을 도모</u>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위생상의 편의와 안전 및 복 지증진-----.</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u>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u>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u> 2. “민간화장실”이란 <u>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제1호의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u>
<p>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u>공중화장실 등의</u></p>	<p>제5조(설치기준) ----- ----- ----- ----- ----- <u>공중화장실등의</u> --</p>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범죄예방)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사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가 -----

----- 전부를 단체·개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은 공중화장실을 다수인이 -----

항상 -----
-----.
----- 항상 -----

-----.

<삭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9조(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
방) ①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
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
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
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과 협
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하는 자는 불법촬영의 사전 예
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
화장실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
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
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관 련 법 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9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